

2019년도 제1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8. 8.(목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강호갑 위원, 정태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3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15건(안건번호 제2019-89047호~89384호)
 - 회의결과 :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3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전차 회의록 4쪽의 게시물 제목과 회사명은 민원인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8쪽의 게시판 및 게시물 이름, 11쪽의 해외 사행성 사이트 주소를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A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게시물 제목, 회사명, 해외 사행성 사이트 주소는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는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저작물명과 사이트명은 비식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전번호 제2019-89047호~89384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815건임
안전번호 제2019-89047호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체 분량을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19-89048호는 SBS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 '의사요한'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SBS 방송물은 방송사 요청으로 보호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으나, 본 건은 민원인이 신고하여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하였음
SBS홈페이지에서는 월정액 5,500원, 네이버 다시보기는 회당 1,650원을 결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현재 판매 중인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무단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로 검토하였음
 - B 위원 : 데드카피이고 특별한 쟁점이 없어 보여 온라인심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원인이 신고한 건이어서 대면심의에서 의결하는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민원인 신고 건은 간단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대면심의에서 심의하고 있음

- A 위원 : 전문위원 검토한 의견에 동의하며,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 가결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89047호, 8904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89049호~89384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어문, 게임, 영상물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목록을 제시하면서)‘어벤져스 엔드게임’ 불법복제물이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음
(영화 ‘맨인블랙 인터내셔널’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89123호는 모바일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된 것이고, 제목에 ‘초고 화질 자막 떴다’로 기재되어있고, 우리말 자막이 영상 재생화면 하단에 포함되어 있음
(미국 가수 ‘빌리 아일리시의 bad boy’ 제목으로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와 다운로드 및 파일 실행 화면을 함께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89373호는 게시물 제목에 ‘빌리 아일리시의 bad boy’로 되어 있어 ‘bad boy’ 한곡만 게시된 것으로 보이지만,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해 보면 빌보드 핫 100 싱글차트의 100개의 음원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빌리 아일리시’의 음원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의 인기 음원이 포함되어 있음

(‘태연의 그대라는 시’라는 제목으로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와 다운로드 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89381호도 마찬가지로 심의안전명에는 ‘태연의 그대라는 시’라고만 되어있으나, 웹하드에서 실제 제공하고 있는 것은 멜론 실시간 TOP100 MP3파일 100개의 압축 파일임

100곡 중 가수 ‘태연’의 노래가 제일 앞에 있어 저작물명이 ‘그대라는 시’로 지정되었고, ‘송하예의 니소식’, ‘마크툽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등 최신 인기 음원이 포함되어 있음

- A 위원 : 멜론에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질의함
- C 위원 : 현재 멜론에서 스트리밍과 함께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고 있음
멜론차트 100위를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다운로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100곡을 압축파일형태로 웹하드에 올리는 이유는 패킷당 과금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용량이 많아야 수익성이 좋아짐
웹하드 입장에서도 게시자가 압축파일로 올리면 한곡씩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웹하드 입장에서는 업로더가 MP3파일을 한곡씩 100개를 올리는 것보다 100개 음원파일을 압축하여 하나의 게시물로

올리는 것이 수익성이 좋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인지 질의함

- C 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A 위원 : 용량에 따라 과금되는 구조임

- C 위원 : 100곡을 압축하여 올리면 한 번에 파일 서버로 넘기면 되지만 한곡씩 100번을 올리면 서버에서 처리해야하는 일이 많아짐
웹하드 입장에서 전체적인 리소스 관리 등 운영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1개의 압축파일을 내려 받는 것이 효과적임

- A 위원 : 데드카피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89049호~8938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89047호~89384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

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22.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호갑

위원 정태호